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2호 2021. 1. 12(수)

선 람	기관의장

**훈 령**

○ 남원시의회 훈령 제424호 남원시의회 의장·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 -----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의회 의장·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22년 1월 12일

남원시의회 훈령 제 424 호

남원시의회 의장·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

남원시의회 의장·부의장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2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”를 “1일전 18시까지 사무국에”로 한다. 같은 조 단서조항에 “2일전”를 “1일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후보자 등록) ① 의장단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선거일 <u>2일전</u>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. 다만 <u>2일전</u>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정상근무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후보자 등록) ① ----- ----- ----- ---- <u>1일전</u> 18시까지 사무국에 -----<u>1일</u> <u>전</u>이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